승인번호
제106026호

발 간 등 록 번 호
11-1480000-001553-10

쓰레기 종량제 현황(2019년도 기준)

2020. 12.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목 차

Ⅰ. 발간개요 ····· 1

Ⅱ. 2019년도 쓰레기 종량제 운영 현황 ····· 6

1. 쓰레기 종량제 일반 현황 ····· 7

2. 쓰레기 종량제 물품 제작 및 판매 현황 ····· 9

3. 쓰레기 수거방법 및 수거주기 ····· 16

4.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률 ····· 18

5. 대형폐기물 ·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및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체계 ····· 20

6.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 현황 ····· 22

Ⅲ. 시·도(시·군·구)별 세부 현황 ····· 23

1. 쓰레기 종량제 일반 현황 ·····

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 ·····

나. 마을단위 종량제 실시 현황 ·····

다. 사업장 폐기물 종량제 적용 ·····

라. 일제 대청소의 날 지정·운영 ·····

2. 쓰레기 종량제 물품 제작 및 판매 현황 ·····

가. 일반용 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 ·····

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 제작 및 판매 현황 ·····

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 ·····

라. 공공용 봉투·무상지급 물품 제작 및 사용 현황 ·····

마. 쓰레기 규격 봉투 품질관리실태 점검실적 ·····

3. 쓰레기 수거방법 및 수거주기 ·····

가. 쓰레기 수거 방법 ·····

나.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주기 ·····

다. 청결유지 책임제 도입 및 시행실적 ·····

라. 폐기물 감량을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 ·····

4.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률 .....

가.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

나. 주민부담률 .....

5. 대형폐기물 ·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및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체계 .....

가. 대형폐기물 배출체계 .....

나. 대형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다.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처리체계 .....

6.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 현황 .....

가. 단속반 편성운영 방법 .....

나. 공무원에 의한 단속실적 .....

다. 주민 신고 실적 .....

라.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유통 현황 .....

Ⅰ 발간개요

Ⅰ. 발간개요

□ 발간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쓰레기 종량제 현황을 연보로 발간하여 관련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수거·처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 발간연혁

○ '03년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현황' 최초 작성

○ '06년 국가승인통계 승인(승인번호: 제 106026호)

○ '08년 폐기물 통계업무 일원화 계획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작성

□ 발간근거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자원순환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자원순환 통계조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Ⅴ.행정사항(환경부)

□ 작성 대상폐기물

○ 생활폐기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음식물류폐기물

□ 작성 기준시점 및 기간

○ 기준시점: 2019. 12. 31.

○ 대상기간: 2019. 1. 1. ~ 2019. 12. 31.

○ 지자체 보고기간: 2020. 3. 31.

□ 작성방법 및 보고체계

○ 보고자

- 1차 자료 작성: 전국 17개 시・도(229개 시・군・구) 통계 담당자
- 2차 자료 작성: 한국환경공단 '쓰레기 종량제 현황' 통계 담당자

○ 작성내용

- 종량제 일반현황(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및 마을・사업장 단위 종량제 실시현황 등)
- 종량제 물품 제작・판매 현황(봉투 등 제작량・비용, 판매실적, 무상사용량 등)
- 수거방법 및 수거주기(쓰레기 수거방법, 수거주기 등)
-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률(청소예산 수입・지출 항목별 정리)
- 대형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및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체계
-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 현황

○ 작성방법: 보고양식(엑셀서식) 공문 송부

○ 작성체계: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시・도)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 통계결과 공표

○ 발간된 책자는 국회, 국가기록원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

○ 환경부 홈페이지(환경통계포털), 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환경통계정보) 및 국가통계포털(kosis)에 게재

□ 통계 이용 시 유의사항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을 적용하므로 각 항목 값의 합이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통계표 '기타' 항목에 수록된 숫자는 품목에 따라 단위가 다를 수 있음

○ 보고서의 항목별 세부 사항은 「쓰레기 종량제 현황(2019년도)」 통계의 각 세부 데이터 참조

○ 이 보고서 내 통계표 및 그래프 등의 수치 활용 시 임의변경은 불가하며, 보고서 활용 시 출처 기재 필요

□ 주요용어

(1) 폐기물의 종류

○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가정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등의 운영에 관계되지 아니한 폐기물

○ 대형폐기물

-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 개별개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폐기물

[표 1. 대형폐기물의 종류]

구분	내용
가전제품류*	냉장고, 세탁기, 탈수기, 청소기, 가습기, 다리미, 팩스기기, 에어컨디셔너, 텔레비전, 전축, 컴퓨터, 스피커, 온풍기, 난로, 가스오븐렌지, 전자레인지, 선풍기 등
가구류	장롱, 응접세트, 식탁, 밥상, 싱크대, 책상, 책꽂이, 침대 목재 및 매트리스, 의자, 장식장, 화장대, 문갑, 서랍장, 옷걸이, 신발장 등
생활용품	쌀통, 벽시계, 인형류, 장난감류, 가방, 액자, 진열대, 캐비닛, 피아노, 기타 등
기타	문짝, 수족관, 거울, 자전거, 유모차, 깨진 유리, 항아리, 세면대, 변기통, 장판, 카펫, 목재, 플라스틱류, 폐소화기류 등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에 근거하여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여야 함

○ 공사장생활폐기물

-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2) 재질·성분별 종량제 봉투

○ PE(HDPE, LLDPE) 봉투

- PE(합성수지)를 주원료로 제조한 쓰레기 분리수거용 봉투

○ 탄산칼슘 봉투

-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하고, 탄산칼슘을 첨가하여 제조한 봉투

○ 생분해성·생붕괴성 봉투

- 생분해성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가공·제조하거나 전분을 혼합한 봉투

Ⅱ 2019년도 쓰레기 종량제 운영현황

Ⅱ. 2019년도 쓰레기 종량제 운영현황

1. 쓰레기 종량제 일반현황

○ **(생활폐기물 관리지역*)** 전국 3,491개 읍·면·동 중 99%(3,489개) 지역이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이며, 전체 22,481천 가구 중 99%(22,469천 가구)가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 해당함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 적용

[표 2. 생활폐기물 관리지역] (단위: 개소)

연도	전체행정구역*		생활폐기물 관리지역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	
	읍·면·동 수	가구 수	읍·면·동 수	가구 수	읍·면·동 수	가구 수
2018	3,510	22,042,947	3,507	22,029,224	3	13,723
2019	**3,491**	**22,481,466**	**3,489**	**22,469,275**	**2**	**12,191**

*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2019.12.31.현재)'

○ **(마을단위 종량제* 실시현황)** 마을단위로 공동 수거하여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분배하는 마을단위 종량제 실시가 가능한 지역이 전국 2,102개 마을이며, 이 중 약 28.3%(595개)가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함

* 마을단위 종량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지역 중 폐기물 수거체계가 미흡하고 인구 밀도가 낮아 분리배출 및 수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는 마을단위 또는 지역단위로 공동 수거하고,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분배

[표 3. 마을단위 종량제 실시현황] (단위: 개소)

대상지역		실시지역		미실시 지역	
마을 수	가구 수	마을 수	가구 수	마을 수	가구 수
2,102	203,072	595	49,879	1,507	153,193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현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전국 8,163개소 대상 사업장에서 121,122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이에 대한 처리비용은 12,699백만 원이었으나 26,708백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남

*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표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현황]

(단위: 개소, 톤, 백만 원)

대상 사업장 수	폐기물 수거량	폐기물 처리비용	비용 징수금액
8,163	121,122	12,699	26,708

○ **(일제 대청소의 날 지정·운영* 현황)** 전국 229개 자치단체 중 98.3%(225개)가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하며, 33,572개 단체가 참여하여 약 25,376톤의 쓰레기를 수거, 1,412백만 원을 처리비용으로 사용함

*「폐기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봄맞이 대청소 실시 등 자치단체별 대청소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에게 청소 참여를 적극 홍보

[표 5. 일제 대청소의 날 지정·운영 현황]

(단위: 개소, 명, 톤, 백만 원)

청소의 날 지정·운영 자치단체 수			청소의 날 운영 실적			
계	지정	미지정	참여단체	참여인원	쓰레기 수거량	쓰레기 처리비용
229	225	4	33,572	1,229,496	25,376	1,412

2. 쓰레기 종량제 물품 제작 및 판매현황

○ (일반용 봉투,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물품 제작량 및 제작비용)

- ’19년도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량은 1,219,565천 매로 전년(1,202,190천 매)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제작비용은 89,185백만 원으로 전년(84,011백만 원) 대비 6.2% 증가함

  * 제작량 및 제작비용은 일반용·음식물 봉투, 음식물 전용용기 모두 포함
  * 제작량은 당해연도에 제작된 총량을 합하여 작성(전년도 이월량 불포함)
  * 일부 지자체 특수규격봉투 신규제작과 제작단가 상승에 따라 제작비용 소폭 증가 (제작비용 ≒ 제작량 × 제작단가)

- 재질별 종량제봉투 제작수량은 PE재질 봉투가 894,542천 매(73.3%), 음식물기타(RFID 등)는 96,627천 매(7.9%), 탄산칼슘함유 봉투가 88,050천 매(7.2%), 재활용제품봉투 66,204천 매(5.4%)순으로 나타남

[표 6. 재질별 종량제봉투 제작수량] (단위: 천 매, 개)

연도	계	PE 재질봉투	탄산칼슘 함유봉투	생분해·생붕괴성 봉투	특수규격봉투 (PP마대 등)	음식물 납부필증 (스티커)	재활용제품봉투 (폐합성수지40%)	음식물 납부필증(칩) 및 기타(RFID 등)
2015	1,206,802	968,329	87,112	-	5,520	65,684	-	80,157
2016	1,191,506	958,274	90,134	-	6,390	65,141	-	71,567
2017	1,241,728	982,801	86,985	445	8,583	67,230	-	95,684
2018	1,202,190	915,218	86,993	-	8,762	64,776	52,824	73,617
2019	**1,219,565**	**894,542**	**88,050**	**-**	**10,381**	**63,761**	**66,204**	**96,627**

* ‘10년 음식물 처리(용기, 스티커, 기타(칩 등)) 및 ‘15년 ‘특수규격봉투(PP마대 등)’ 항목 신설
* ‘15년 음식물 처리에 대한 항목 변경(납부필증(스티커, 칩), RFID(개별, 차량), 기타)
* ’18년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현황 항목 신설
* ‘19년「쓰레기종량제현황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로 생붕괴성봉투, 생분해성봉투 항목이 생분해·생붕괴성봉투 항목으로 통합

○ **(일반용 봉투,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물품 판매량 및 판매금액)**

- '19년도 종량제봉투 판매량은 992,077천 매로 전년(1,025,257천 매) 대비 3.2% 감소하였고, 종량제봉투(일반용 및 음식물 전용) 판매금액은 679,259백만 원으로 전년(659,609백만 원) 대비 3.0% 증가함

  * 판매량 및 판매비용은 일반용·음식물 봉투 포함, 음식물 전용용기 제외
  * 판매단가가 높은 특수규격 봉투(50L)의 판매량이 전년대비 증가 (판매비용 ≒ 판매량 × 판매단가)

[표 7. 일반·음식물용 봉투 판매량 및 판매금액] (단위: 천 매, 백만 원)

구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판매량	1,031,042	1,011,455	1,099,256	1,025,257	**992,077**
판매금액	528,851	576,370	621,672	659,609	**679,259**

- 종류별 종량제봉투 판매수량은 가정용봉투 612,950천 매(61.8%), 음식물 전용봉투 357,168천 매(36.0%), 사업장용 봉투 11,998천 매(1.2%), 특수규격봉투(PP마대 등) 9,961천 매(1.0%) 등으로 나타남

[표 8. 종류별 종량제봉투 판매량 및 판매금액] (단위: 천 매, 백만 원)

구분	계	가정용 봉투	사업장용 봉투	특수규격봉투 (PP마대 등)	음식물 전용봉투
판매량	**992,077**	612,950	11,998	9,961	357,168
판매금액	**679,259**	539,343	50,038	22,695	67,183

○ (종량제봉투 제작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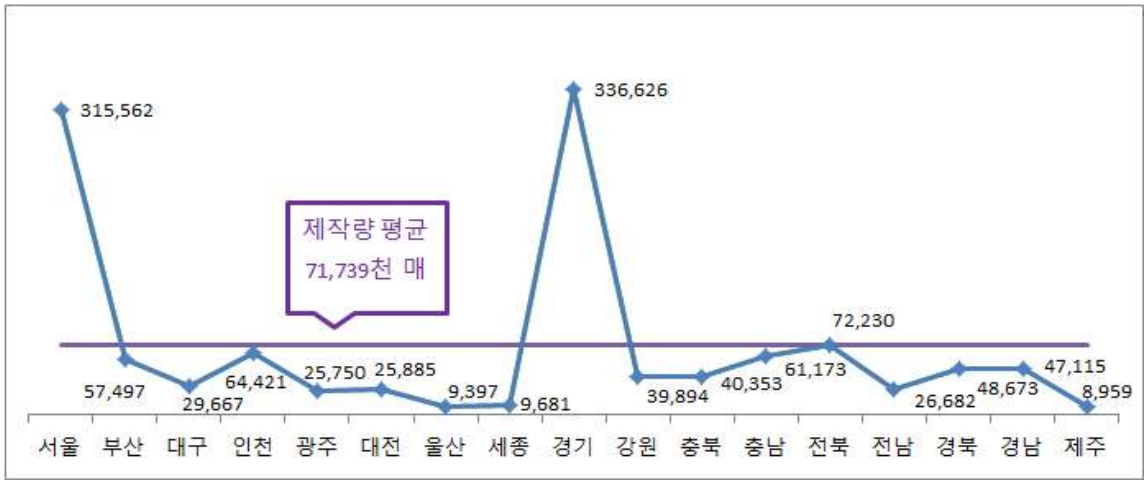

<그림 1> 시·도별 일반용봉투,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물품 제작량

<그림 2> 전년 대비 증감률

○ (종량제봉투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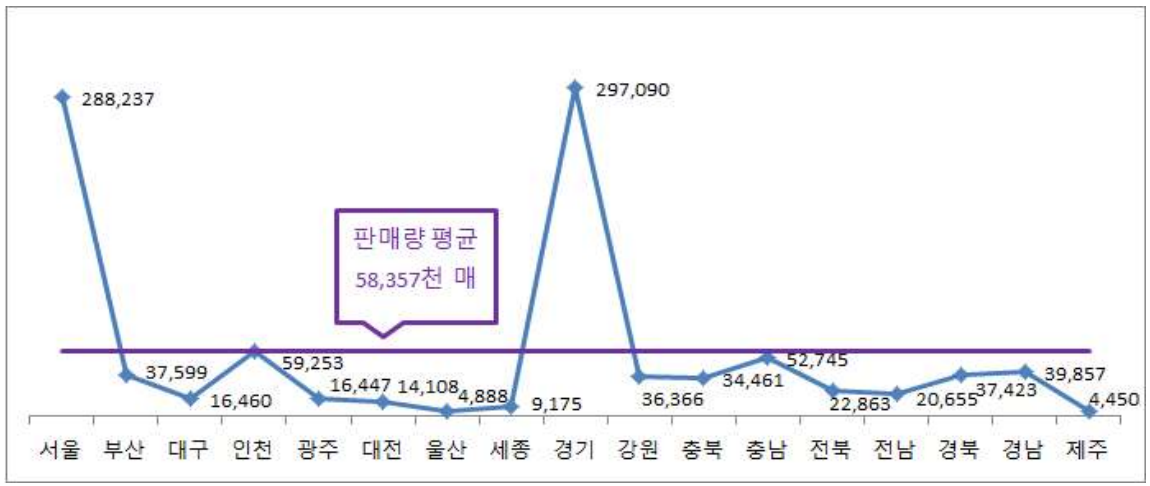

<그림 3> 시·도별 일반용봉투,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물품 판매량

<그림 4> 전년 대비 증감률

○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단가)

- '19년도 전국 229개 시·군·구의 20L 종량제봉투 평균가격은 가정용 508원/매, 사업장용 883원/매로 나타남

[표 9. 가정용 및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판매단가] (단위: 원/매, %)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전년대비 증감률	
	가정용	사업장용	가정용	사업장용	가정용	사업장용
5L 봉투	138	230	**138**	**210**	0	-8.7
10L 봉투	257	425	**258**	**430**	0.4	1.8
20L 봉투	507	878	**508**	**883**	0.2	0.6
30L 봉투	810	1,427	**806**	**1,430**	-0.5	0.2
50L 봉투	1,300	2,959	**1,305**	**2,168**	0.4	-26.7

- 특수규격 종량제봉투(20L)의 평균가격은 1,153원, 음식물용 종량제봉투(20L)의 평균가격은 761원으로 나타남

[표 10. 특수규격 및 음식물용 봉투 판매단가] (단위: 원/매, %)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전년대비 증감률	
	특수규격	음식물용	특수규격	음식물용	특수규격	음식물용
5L 봉투	560	176	**160**	**180**	-71.4	2.3
10L 봉투	601	347	**561**	**356**	6.7	2.6
20L 봉투	1,166	759	**1,153**	**761**	-1.1	0.3
30L 봉투	1,389	1,423	**1,534**	**1,393**	10.4	2.1
50L 봉투	2,620	1,002	**2,813**	**1,048**	7.4	4.6

○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판매 실적)

- '19년도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수량은 616,409천 매이며, 전년도 이월분을 포함하여 532,061천 매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제작량은 전년(374,371천 매) 대비 64.7%(242,038천 매)와 판매량은 전년(359,494천 매) 대비 48.0%(172,567천 매) 증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에 근거하여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 상점가와 매장크기 165m^2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 및 무상금지에 따라 재사용 봉투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비닐봉투 대용으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를 추진

[표 11.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판매 실적]

(단위: 천 매, 개소, 백만 원)

연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재사용봉투판매소				판매수량			
	제작량						제작 비용	판매 금액	계	백화점	할인점	슈퍼 등	계	백화점	할인점	슈퍼 등
	계	3L	5L	10L	20L	30L										
2015	277,641	11	200	53,015	224,030	385	15,527	119,698	33,988	45	900	33,043	276,613	3,112	99,408	174,093
2016	305,319	730	2,422	57,076	244,791	300	16,451	138,160	43,102	37	990	42,075	296,727	3,863	106,046	186,818
2017	338,684	144	3,440	63,361	269,883	1,856	17,954	158,349	49,180	42	813	48,325	321,859	3,219	98,718	219,922
2018	374,371	129	3,703	67,752	301,327	1,260	20,572	178,125	58,247	71	790	57,386	359,494	3,788	96,468	259,238
2019	**616,409**	**380**	**7,725**	**140,747**	**465,243**	**2,314**	**32,210**	**255,316**	**76,028**	**77**	**962**	**74,992**	**532,061**	**5,037**	**94,241**	**432,844**

* '2015년 기준 쓰레기종량제 현황' 작성 시부터 제작량에 '3L', '5L', '30L' 항목 추가

○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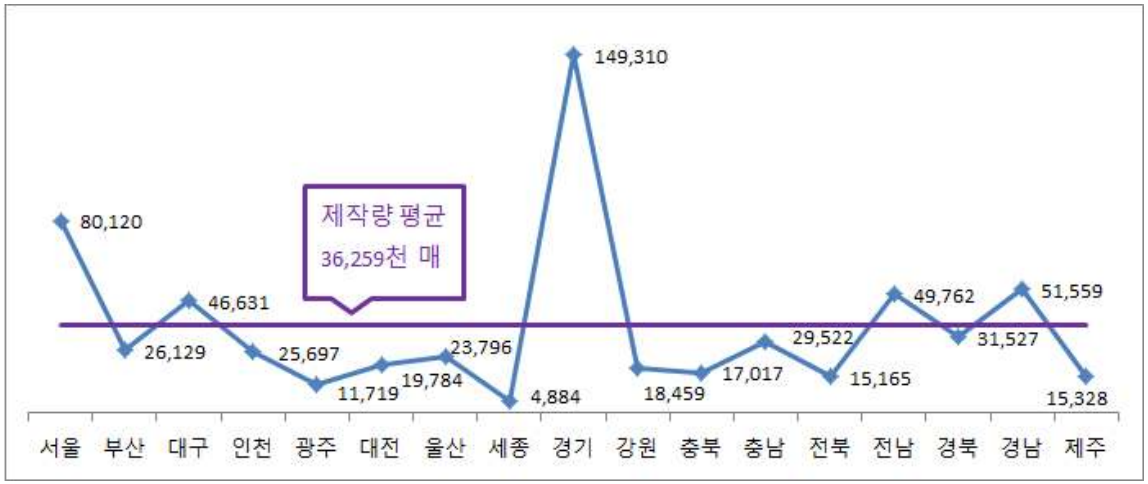

<그림 5> 시·도별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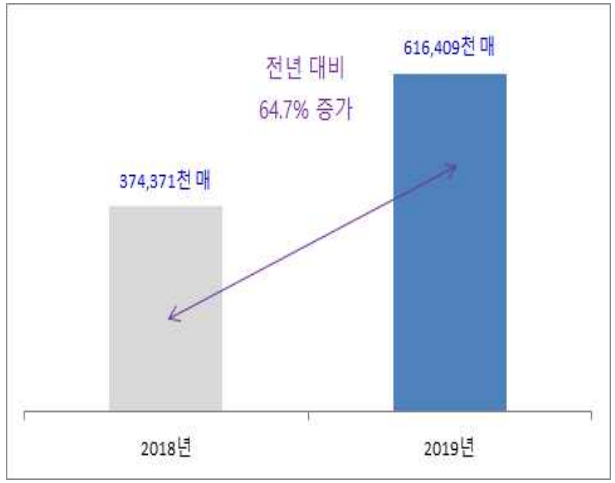

<그림 6> 전년 대비 증감률

○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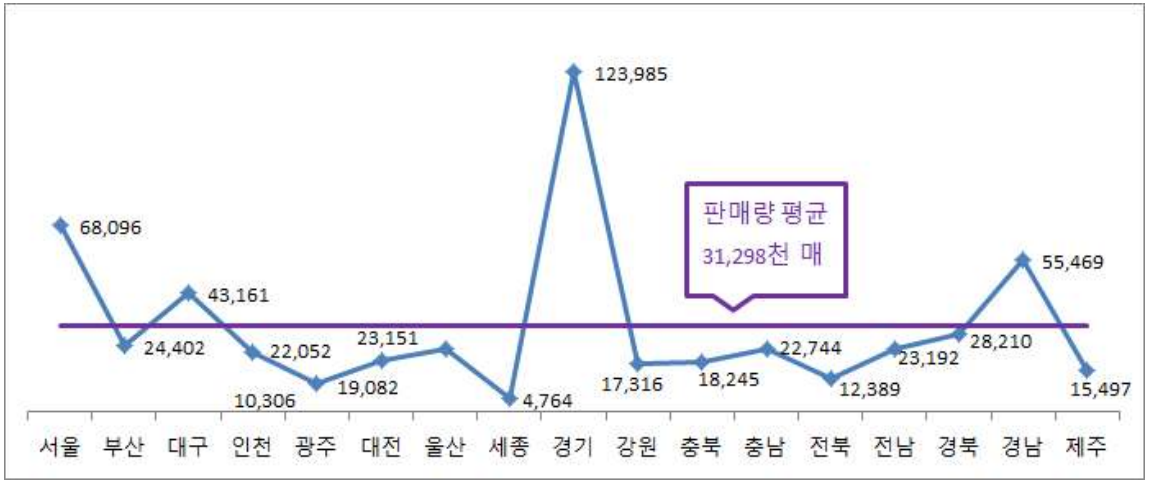

<그림 7> 시·도별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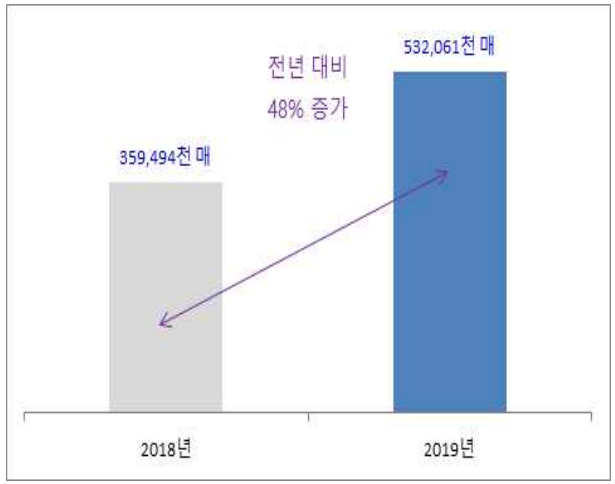

<그림 8> 전년 대비 증감률

○ (쓰레기 종량제 물품 무상사용량 및 환산금액)

- ’19년도 종량제 물품 무상사용량*은 102,338천 매로 전년(96,734천 매) 대비 5.8% 증가하였으며, 환산금액은 ’19년도 75,313백만 원으로 전년(73,214백만 원) 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무상사용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영세민 등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물품(봉투, 납부필증(스티커, 칩) 등)

[표 12. 쓰레기 종량제 물품 무상사용량 및 환산금액] (단위: 천 매, 백만 원)

연도	계		공공용 봉투		무상지급 물품	
	사용·지급수량	환산금액	사용수량	환산금액	지급수량	환산금액
2015	89,647	58,948	28,699	40,590	60,948	18,358
2016	93,965	69,006	30,168	48,789	63,797	20,217
2017	88,422	70,332	29,194	49,478	59,228	20,854
2018	96,734	73,214	31,276	53,309	65,458	19,904
2019	**102,338**	**75,313**	**31,055**	**52,311**	**71,283**	**23,002**

3. 쓰레기 수거방법 및 수거주기

○ (쓰레기 수거방법)

- 생활폐기물 수거방식은 문전수거식이 83.1%(18,679천 가구), 거점수거식이 16.9%(3,791천 가구)로 나타남

[표 13. 쓰레기 수거방법]

(단위: 천 가구)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계	문전 수거식	주민 상차식	거점 수거식	계	문전 수거식	주민 상차식	거점 수거식	계	문전 수거식	주민 상차식	거점 수거식
가구 수	21,616	17,725	-	3,891	22,029	18,155	-	3,874	**22,470**	**18,679**	**-**	**3,791**
비율(%)	100	82	-	18	100	82.4	-	17.6	**100**	**83.1**	**-**	**16.9**

○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주기)

- 쓰레기 수거주기는 주 6회가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3회(26.9%), 주5회(18.0%)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활용품 수거주기는 주 3회가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6회(23.0%), 주2회(22.6%) 순으로 나타남

[표 14.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주기]

(단위: 천 가구)

구분		계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주7회	기타
2018 년도	쓰레기 수거주기	22,029	145	564	6,273	736	4,027	9,460	799	25
	재활용품 수거주기	22,029	2,559	4,930	6,898	36	2,123	4,992	493	-
2019 년도	**쓰레기 수거주기**	**22,470**	**318**	**650**	**6,048**	**730**	**4,050**	**9,782**	**892**	**-**
	재활용품 수거주기	**22,470**	**2,197**	**5,087**	**6,829**	**74**	**2,608**	**5,170**	**504**	**-**

○ (청결유지책임제 시행)

- 자치단체 조례에 청결유지책임제*를 규정·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227개이며, '19년도에 2,078건의 청결유지 이행을 명령하고, 그 중 332건(16%)이 이행되지 않아 93,612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남

  * 청결유지책임제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각종 집회, 시위, 행사 등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나 신고수리 시에 동 집회나 행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행사 등의 추진주체가 수거하도록 조치하여 행사장소의 청결을 유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결을 유지하도록 조례로서 필요한 조치를 명령

[표 15. 청결유지 책임제 도입 및 시행실적] (단위: 개소, 건, 천 원)

청결유지책임제 도입·시행 자치단체수			이행명령실적	과태료 부과실적		비고
계	도입시행	미도입		건수	금액	
229	227	2	2,078	332	93,612	

○ (폐기물 감량을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

- 전국 229개 시·군·구 중 92.6%인 212개에서 자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관련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센티브제도 : 폐기물 감량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촉진하고, 폐기물 줄이기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제고
  * 인센티브제 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재활용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계량이 가능한 폐기물을 대상으로 실시

4.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률

○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 '19년도 전국 평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33.0%로 전년 대비 0.9% 증가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가 58.3%로 가장 높고, 전라남도가 19.9%로 가장 낮음
  * 재정자립도: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종량제봉투 판매 이외의 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재활용품 판매수입+대형폐기물수수료 수입+기타 수입(과태료 등)] ÷ 연간 폐기물 총 처리비용*
  * 연간 폐기물 총 처리비용: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비용 및 가로청소 비용 등

[표 16. 시·도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단위: 백만 원, %)

시·도별	수입항목*(A)	지출항목*(B)	청소예산 재정자립도(A/B)
계	**1,237,917**	**3,752,684**	**33.0**
서울	274,582	471,279	**58.3**
부산	69,395	238,646	29.1
대구	50,669	170,019	29.8
인천	64,625	195,229	33.1
광주	28,319	71,545	39.6
대전	34,653	106,571	32.5
울산	27,927	63,815	43.8
세종	6,193	27,852	22.2
경기	308,633	1,028,417	30.0
강원	46,171	195,674	23.6
충북	31,990	132,319	24.2
충남	50,973	196,137	26.0
전북	43,389	165,115	26.3
전남	34,390	173,231	**19.9**
경북	50,618	192,133	26.3
경남	87,737	217,114	40.4
제주	27,653	107,588	25.7

* 수입항목: 폐기물 수수료, 재활용품 판매수입, 과태료 등
* 지출항목: 폐기물 처리, 재활용품 수집선별, 기타 청소 비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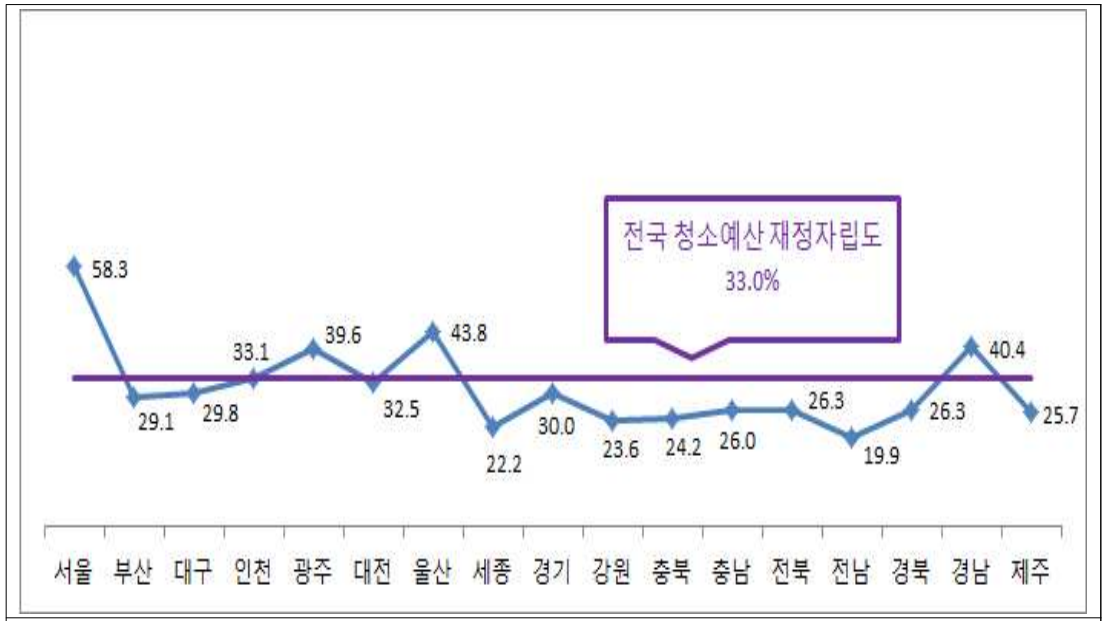

<그림 9> 시·도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 (주민부담률)

- '19년도 전국 평균 주민부담률은 33.0%로 전년 대비 0.7% 증가됨
- '19년도 시·도별 주민부담률은 울산광역시가 65.5%로 가장 높고, 전라남도가 14.2%로 가장 낮음

* 주민부담률(%):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 100

[표 17. 시·도별 주민부담률] (단위: 백만 원, %)

시·도별	수집운반처리비*(A)	종량제봉투 판매수입*(B)	주민부담률(B/A)
계	**3,078,021**	**1,014,905**	**33.0**
서울	397,591	244,334	61.5
부산	123,700	65,124	52.6
대구	92,510	42,409	45.8
인천	117,337	62,919	53.6
광주	63,902	29,221	45.7
대전	71,949	32,968	45.8
울산	41,321	27,057	**65.5**
세종	24,516	5,188	21.2
경기	883,340	226,903	25.7
강원	145,935	30,696	21.0
충북	125,634	28,677	22.8
충남	189,134	32,264	17.1
전북	138,738	36,205	26.1
전남	184,622	26,190	**14.2**
경북	203,734	39,167	19.2
경남	192,237	70,170	36.5
제주	81,821	15,413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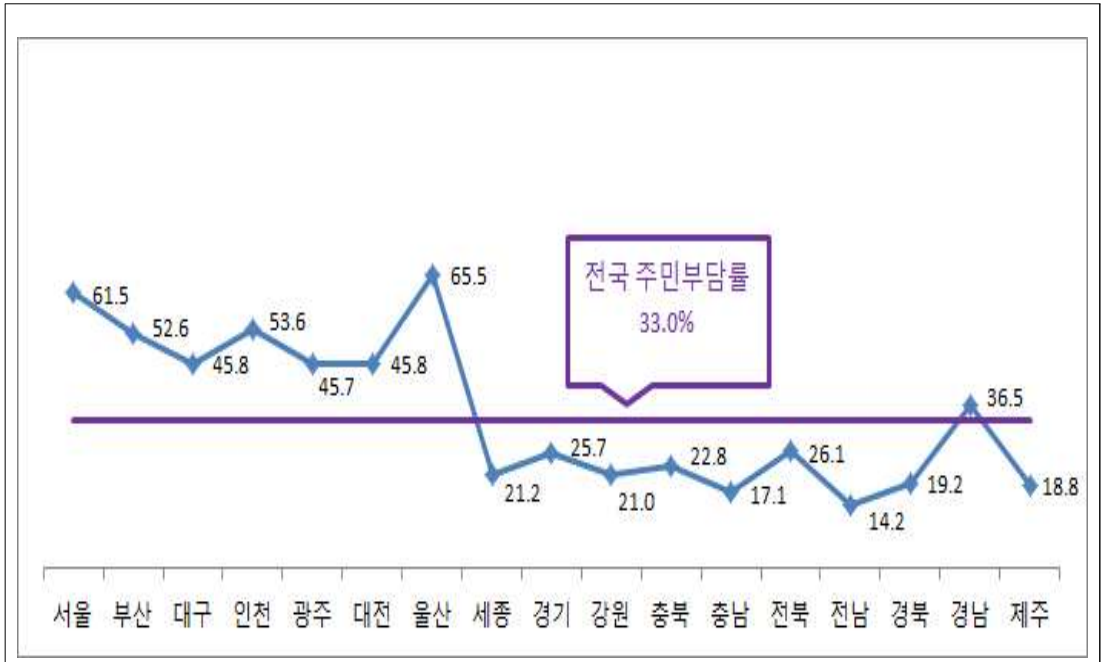

<그림 10> 시·도별 주민부담률

* 수집운반처리비 :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가정배출 혼합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에 소요된 비용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봉투 판매에 따른 소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봉투판매 수입을 산정

5. 대형폐기물 ·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및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체계

○ (대형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 전체 229개 자치단체 중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 배출스티커를 발부받아 배출하는 자치단체는 135개(59.0%), 인터넷 신고방식 112개(48.9%), 수거대행업체 위탁은 109개(47.6%), 기타 방식 33개(14.4%)로 나타남

  * 전체 229개 시·군·구 중 142개 시·군·구가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운영

○ (대형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19년도 대형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은 1,518,524톤이며, 처리방식으로는 재활용 853,428톤(56.2%), 소각 523,751톤(34.5%), 매립 89,760톤(5.9%), 기타 51,584톤(3.4%) 순으로 나타나며, 처리수수료 징수액은 100,701백만 원으로 총 처리비용의 약 5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19년도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은 397,806톤이며, 처리방식으로는 매립 274,062톤(68.9%), 재활용 63,359톤(15.9%), 소각 55,302톤(13.9%), 기타 5,083톤(1.3%) 순으로 나타나며, 처리수수료 징수액은 14,637백만 원으로 총 처리비용의 약 82.5%로 나타남

[표 18. 대형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단위: 톤, 백만 원)

구분	발생 및 처리량					수입·처리비용			
						수입(수수료)			처리비용
	계	소각	매립	재활용	기타	소계	직영	위탁	
계	1,916,330	579,053	363,822	916,787	56,667	115,338	58,423	56,915	192,202
대형폐기물	1,518,524	523,751	89,760	853,428	51,584	100,701	48,977	51,725	174,462
공사장생활폐기물	397,806	55,302	274,062	63,359	5,083	14,637	9,446	5,190	17,740

○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처리체계)

-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처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국 229개 중 170개(74.2%)이며,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분리수거하는 자치단체가 161개(70.3%),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분리수거하는 자치단체가 9개(3.9%)이며, '19년도 수거량 304,157톤 중 약 93.6%(284,654톤)가 재활용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9. 분리수거 실시여부] (단위: 개소)

자치단체수	분리수거 자치단체수		미분리수거 자치단체수	유·무상 수거 자치단체수	
	전지역	일부지역		유상	무상
229	161	9	59	10	157

[표 20.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처리실적] (단위: 톤)

수거실적	처리실적					
	계	재활용업체		수출	자체비축	기타
		유상	무상			
304,157	304,157	116,196	168,458	-	299	19,204

6.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 현황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는 181개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19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및 단속건수는 367,811건으로 전년(357,702건) 대비 2.8% 증가함

- 과태료 부과 건수(200,941건)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5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17,242백만 원으로 전년(14,617백만 원) 대비 약 18.0% 증가하였음

[표 21.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및 단속건수]

(단위: 건, 백만 원)

연도	단속(적발) 건수			과태료 부과건수			과태료 부과금액		
	계	주민신고	공무원단속	계	주민신고	공무원단속	계	주민신고	공무원단속
2015	288,917	26,219	262,698	137,263	17,458	119,805	10,312	962	9,350
2016	321,706	22,704	299,002	169,731	15,525	154,206	12,781	1,517	11,264
2017	530,786	27,898	502,888	197,677	16,856	180,821	14,204	1,516	13,627
2018	357,702	32,596	325,106	199,109	16,083	183,026	14,617	1,763	12,854
2019	**367,811**	**38,223**	**329,588**	**200,941**	**22,324**	**178,617**	**17,242**	**2,193**	**15,049**

○ ’19년도 신고포상금 건수 및 지급액은 각각 10,269건, 188백만 원으로 전체 주민신고 건수의 약 26.9%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포상금액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약 8.6%임

[표 22. 쓰레기 무단투기 시민신고]

(단위: 건, 백만 원)

연도	쓰레기 무단투기 시민신고				
	주민신고 건수	과태료 부과		신고포상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5	26,219	17,458	962	8,714	119
2016	22,704	15,525	1,517	7,156	156
2017	27,898	16,856	1,516	7,316	154
2018	32,596	16,083	1,762	8,877	171
2019	**38,223**	**22,324**	**2,193**	**10,269**	**188**

○ ’19년도 종량제 불법 제작·유통 현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Ⅲ 시 · 도(시 · 군 · 구)별 세부현황